

예탁증권담보용자약관 신규조문대비표(2018.10.08 개정)

구분	현 재	개정(안)	비 고
제 3 조(예탁증권 담보용자 서비스 구분)	예탁증권담보용자란 고객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하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용자」란 회사에 거래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적립형 일반담보용자」란 일반담보용자로서 적립식 패키지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란 일반담보용자로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연금저축계좌 내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매도증권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예탁증권담보용자란 고객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하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담보용자」란 회사에 거래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2. 「연금형 일반담보용자」란 일반담보용자로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가진 고객에게 연금저축계좌 내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매도증권담보용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적립형 일반담보 용자 폐지 3, 4 항목을 ②,③항 목으로 변경 이동
제 4 조(약정신청 및 해지)	① ~ ⑤ (생략) ⑥ 고객은 일반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출금가능금액(CMA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별지>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출금요청에 대해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A-Loan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⑦ ~ ⑧ (생략) (신 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고객은 일반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출금가능금액(CMA RP 평가금액 포함, 단 평가 가능한 RP 는 <별지>에서 정한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한 출금요청에 대해 보유 예탁증권을 담보로 자동으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소액자동담보용자’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고객은 예탁증권담보용자약정 신청 시 ‘S-Loan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별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A- Loan 서비스’ 용어변경 → 소액자동 담보용자 ‘S- Loan 서비스’ 신청방법 추가

제 5 조(예탁증권 담보유자 신청방법)	① (생략) ② 예탁증권담보유자약정을 체결할 때 <u>‘A-Loan 서비스’</u> 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없이 단순 출금 요청 만으로도 유자가 신청될 수 있다. ③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예탁증권담보유자약정을 체결할 때 ‘소액자동담보유자’ 신청을 한 고객의 경우 신청서, 전자문서 작성 없이 단순 출금 요청 만으로도 유자가 신청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A-Loan 서비스’ 용어변경 → 소액자동담보유자
제 9 조(유자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부)	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유자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유자이자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u>단, 적립형 일반담보유자의 경우는 유자이자를 고객이 지정한 적립일에 납입하여야 한다.</u> ② ~ ③ (생략)	① 고객은 <별지>에서 정하는 유자이자율에 따라 매월분의 유자이자를 <별지>에서 정하는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적립형 일반담보 유자 폐지
제 12 조(임의상 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계좌에 예탁된 현금(<u>해외주식담보유자 신청 시 외화예수금 포함</u>)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u><별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u>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계좌에 예탁된 현금(외화예수금 포함)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분 3.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외화예수 금 포함기준 변경 해외 증권시장 에 상장된 증권의 임의상환 방법 명시

	요구 4.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 ⑦ (생략)	요구 4.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 13 조(예탁증권담보유자의 상환)	① ~ ② (생략) ③ ‘A-Loan 서비스’ 로 용자받은 용자금 및 용자이자 는 고객 의 신청 없이 매 영업일 22:00 경 현금상환 가능금액 내에서 용자일 빠른 순으로 자동으로 상환 된다.	① ~ ② (생략) ③ ‘소액자동담보유자’ 로 용자받은 용자금 및 용자이자 는 고객 의 신청 없이 매 영업일 22:00 경 현금상환 가능금액 내에서 용자일 빠른 순으로 자동으로 상환 된다.	‘A-Loan 서비스’ 용어변경 → 소액자동담보유자
〈별 지〉	2. 제 4 조제 6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u>A-Loan 서비스</u> 는 다음과 같다. 가. <u>A-Loan 서비스</u>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 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나. <u>A-Loan 서비스 제한</u> 1) <u>고객이 직접 실시간 출금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자동이체대체약정, 정기신용공여이자 출금 등 정기적 출금거래의 부족금액 발생은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u> 2) HTS, WTS, MTS 등 고객용 매체의 출금신청 화면에서는 <u>A-Loan 서비스</u> 가능금액을 포함/미포함 한 출금가능금액 모두 확인이 가능하나 타업권, 타사의 ATM 기에서는 <u>A-Loan 서비스</u> 가능금액을 포함한 출금가능금액만 조회 가능하다. 다. <u>A-Loan 서비스</u> 관리 일반담보유자로서 관리되며 용자기간, 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만기관리 등 동일하게 적용된다.(약정한도 제외)	2. 제 4 조제 6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소액자동담보유자 는 다음과 같다. 가. 소액자동담보유자 신청 가능 계좌 위탁계좌, 개별상품(위탁매매 포함) 매매가 가능한 CMA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 나. 소액자동담보유자 범위 1) 출금, 이체출금, 자동이체, 지로/CMS, 예약이체출금 등의 경우 적용된다. 2) HTS, WTS, MTS 등 고객용 매체의 출금신청 화면에서는 소액자동담보유자 가능금액을 포함/미포함 한 출금가능금액 모두 확인이 가능하나 타업권, 타사의 ATM 기에서는 소액자동담보유자 가능금액을 포함한 출금가능금액만 조회 가능하다. 다. 소액자동담보유자 관리 일반담보유자로서 관리되며 용자기간, 이자율, 이자징수방법, 만기관리 등 동일하게 적용된다.(약정한도 제외)	‘A-Loan 서비스’ 용어변경 → 소액자동담보유자 소액자동담보유자 업무범위 확대

〈별 지〉	4. 제6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다. 1) <u>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설명서</u> > 2. <u>예탁증권담보용자의 한도</u> > 5) 신용공여유형별 예탁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에 게시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4. 제6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u>예탁증권담보용자거래설명서</u> > <u>예탁증권담보용자의 한도</u> > 신용공여유형별 예탁증권담보용자 약정한도에 게시 나.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항목 1),2)를 항목 가,나 로 변경
〈별지〉	5. 제 16 조제 1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신청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략) <u>다. 동일 일자에 동일 종목에 대한 일반담보용자(A-Loan 포함), S-Loan 의 중복 용자신청이 불가 하다. (일반담보용자(A-Loan 포함)와 S-Loan 중 택일)</u> <u>라.</u>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의 용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S-Loan 은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등급이 7~10 등급인 경우 용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됨) <u>마.</u>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u>바.</u>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이 용자 신청 만기일로부터 1 달 이내 인 경우, 용자 신청이 불가하다. <u>사.</u> 해외주식담보용자의 경우 E-mail 정보 미등록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5. 제 16 조제 1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신청 제한은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삭 제) <u>다.</u>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고객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고객의 용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S-Loan 은 회사가 확인한 개인신용등급이 7~10 등급인 경우 용자 약정 및 신청이 제한됨) <u>라.</u>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u>마.</u> 연금형 일반담보용자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일이 용자 신청 만기일로부터 1 달 이내 인 경우, 용자 신청이 불가하다. <u>바.</u> 해외주식담보용자의 경우 E-mail 정보 미등록 계좌는 신청이 불가하다.	일반담보 용자와 S- Loan 의 중복용자 신청가능 하게 업무변경 되어 해당항목 삭제 라~사 항목 다~바 항목으로 이동

〈별지〉	6. 제 6 조 2 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담보용자 1) 국내주식: 가)~나) (생략) <u>다) 당사 담보수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4.9%을 초과하는 종목</u> <u>라)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u> 2) 해외 주식 : <u>미국(NYSE, NASDAQ, AMEX), 일본(도쿄), 홍콩, 중국(상해 A, 심천 A) 증권시장 상장주식으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u> (HTS 담보용자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용자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u>가) 해당 국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u> 나)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정, 공금횡령)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3) ~ 6) (생략) 나. (생략) 다. 매도증권담보용자: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u>→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매도(환매)대금 결제일이 D+2 일 이내 도래하는 경우 가능</u> ※ 해외주식담보용자 약정 신청 시 해외주식 포함(거래국가별 매도(환매)대금 결제일 상이)	6. 제 6 조 2 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 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담보용자 1) 국내주식: 가)~나)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종, 공금횡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2) 해외 주식 : 해외 증권시장 상장주식으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종목 (HTS 담보용자가능종목 조회화면에서 확인 가능) 단, 다음의 경우는 용자가능 대상종목에서 제외 가) 해외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예고한 종목 나) 그밖에 유동성, 재무제표, 주가의 급등락, 불공정 거래(시세조정, 공금횡령)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담보용자 불가능으로 선정한 종목 3) ~ 6)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매도증권담보용자: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삭 제) ※ 해외주식담보용자 약정 신청 시 해외주식 포함(거래국가별 매도(환매)대금 결제일 상이)	다 항목 삭제 항목이동 자구수정 자구수정 결제일과 무관하게 매도담보용자 실행가능에 따른 문구 삭제
-------------	---	---	--

〈별지〉	7. 제7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기기간 및 연장은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용자기거래설명서 > 3.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 > 1) 일반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 / 2)매도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에 게시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7. 제7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용자기기간 및 연장은 다음과 같다. 가. 용자기기간은 결제일로부터 90 일 (단, 연금형은 365 일) 나. 만기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횟수 제한 없이 90 일 단위로 만기연장 가능 (단, 연금형은 1 년 단위 연장 가능) 다. 예탁증권담보용자기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 > 일반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 / 매도증권담보용자의 용자기기간에 게시 라. 만기연장 가능 조건 등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 / 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예탁증권 담보용자 기간 및 연장 내용 명시										
〈별지〉	8.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담보 대상별 <u>일반담보용자한도</u>(S-Loan은 주식만 해당)는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용자기거래설명서 > 2. 예탁증권담보용자의 한도 > 6)용자가 가능금액 > 가) 일반담보용자에 게시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에 게시	8.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담보 대상별 <u>일반담보용자비율</u>(S-Loan은 주식만 해당)는 다음과 같다. 가. 담보대상별 일반담보용자비율 <table><thead><tr><th>담보대상</th><th>용자한도</th></tr></thead><tbody><tr><td>주식</td><td>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td></tr><tr><td>채권</td><td>용자신청일 전일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70%</td></tr><tr><td>파생결합증권/사채</td><td>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60%</td></tr><tr><td>집합투자증권</td><td>기준가격의 60%~70%</td></tr></tbody></table> 나. 예탁증권담보용자기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용자의 한도 > 용자가 가능금액 > 일반담보용자에 게시 다.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에 게시	담보대상	용자한도	주식	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	채권	용자신청일 전일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70%	파생결합증권/사채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60%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60%~70%	별지 제목 수정 담보대상 별 일반담보 용자비율 명시 항목 1),2) 를 항목 나,다 항목로 변경
담보대상	용자한도												
주식	용자신청일 기준가격의 50%~70%												
채권	용자신청일 전일 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70%												
파생결합증권/사채	전일민간시가평가금액의 50%~60%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의 60%~70%												

〈별지〉	9.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매도증권담보유자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설명서 > 2. 예탁증권담보유자의 한도 > 6)유자가능금액 > 나) 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2)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9. 제8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매도증권담보유자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가. 예탁증권담보유자거래설명서 > 예탁증권담보유자의 한도 > 유자가능금액 > 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나.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매도증권담보유자에 게시	항목 1),2) 를 항목 나,다 항목로 변경 자구수정																		
〈별지〉	10. 제9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신용공여 > 예탁증권담보유자'에 게시	10. 제9조제1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기본이자율 (영업점 계좌는 고객서비스 등급별 단일법 적용, 영업점 外계좌는 일괄 단일법 적용) <table><tr><th>구분</th><th>Diamond</th><th>Platinum</th><th>Gold</th><th>Silver</th><th>Bronze</th></tr><tr><td>영업점 계좌</td><td>연 6.0%</td><td>연 6.3%</td><td>연 6.6%</td><td>연 6.9%</td><td>연 7.2%</td></tr><tr><td>영업점 外 계좌</td><td colspan="5">연 9.0%</td></tr></table> * 영업점 外 계좌는 다이렉트(은행)계좌임 나. 만기연장 시 이자율: 만기일 익일의 고객서비스등급 기간별 이자율과 협의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된다. 다. 이자율 산정방법: 이자율은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등 직•간접 비용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가격정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구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영업점 계좌	연 6.0%	연 6.3%	연 6.6%	연 6.9%	연 7.2%	영업점 外 계좌	연 9.0%					기본이자 율 표 추가 만기연장 시 이자율 적용 변경
구분	Diamond	Platinum	Gold	Silver	Bronze																
영업점 계좌	연 6.0%	연 6.3%	연 6.6%	연 6.9%	연 7.2%																
영업점 外 계좌	연 9.0%																				

〈별지〉	12. 제9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예탁증권담보용자 상품별 최대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담보용자, 해외담보용자, A-Loan, S-Loan 용자는 연 9.9%로 적용 ② 연계 CMA 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6.2%적용하며, 연계CMA 미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9.9%로 적용 2)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고객등급별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 3) 협의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협의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 4) 협의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협의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	12. 제9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가. 예탁증권담보용자 상품별 최대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담보용자, 해외담보용자, 소액자동담보용자, S-Loan 용자는 연 9.9%로 적용 2) 연계 CMA 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 6.2%적용하며, 연계 CMA 미약정된 연금형 담보용자는 연9.9%로 적용 나. 기본 연체이자율은 실제 연체 발생시점에 적용 중인 고객등급과 관계없이 연체발생 시점에 해당 차주에게 적용되는 만기 이내의 고객등급별 예탁증권담보용자 이자율 중 최고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로 하며, 최대 연체이자율 이내로 적용 다. 협의 고정이자율 적용 계좌는 협의 고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연 3.0%)를 합산한 이자율과 최대연체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적용 라. 협의 할인이자율 적용 계좌는 최대연체이자율에서 차주에게 적용 중인 협의 할인이자율을 차감하여 적용 ※ 윤년의 경우는 해당일수 반영하여 적용	‘A-Loan’ 용어변경 → 소액자동담보용자 항목 1)~4)를 항목 가~라 로 변경 호①~② 를 1)~2)로 변경										
〈별지 13〉	13.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신용용자+예탁증권담보용자)유형별 최소담보유지비율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 분</th><th>보수형</th><th>기본형</th><th>매매형</th><th>적립형</th></tr><tr><td>최소담보유지비율</td><td>170%</td><td>140%</td><td>140%</td><td>140%</td></tr></table> ※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미 보유 시 : 신용공여 유형에 관계없이 신용공여금액(예탁증권담보용자, 신용용자, 대주 등)의 합이 3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 50 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160%로 적용(적용기준은 15:50 분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단, 보수형, 연금형 담보용자는 제외됨) ※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보유 시 : 신용공여 금액별 차등 담보유지비율에 30% 상향하여 적용됨	구 분	보수형	기본형	매매형	적립형	최소담보유지비율	170%	140%	140%	140%	13.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신용공여(신용용자+예탁증권담보용자)유형별 최소담보유지비율은 140%이며,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보유 여부에 따라 최소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삭 제) 가.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미 보유 시 : 신용공여 유형에 관계없이 신용공여금액(예탁증권담보용자, 신용용자, 대주 등)의 합이 3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 50 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160%로 적용(적용기준은 16:00 경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단, 연금형 담보용자는 제외됨) 나. 해외주식담보용자 잔고 보유 시 : 신용공여 금액별 차등 담보유지비율에 30% 상향하여 적용됨	보수형, 적립형 유형 폐지 자구 수정
구 분	보수형	기본형	매매형	적립형									
최소담보유지비율	170%	140%	140%	140%									

	신용공여금액(국내,해외 합산) 30 억원 이하인 경우 170%, 30 억원 초과하는 경우 180%, 50 억원 초과하는 경우 190%로 적용(적용기준은 1 회차 15:50 분, 2 회차 22:00 분경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신용공여금액(국내/해외 합산) 30 억원 이하인 경우 170%, 30 억원 초과하는 경우 180%, 50 억원 초과하는 경우 190%로 적용(적용기준은 1 회차 16:00 경, 2 회차 22:00 경 기준 신용공여금액 합계액으로 산정하고 당일부터 적용됨)	자구 수정																							
〈별지〉	14. 제 12 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공여유형별 추가담보납부기간 <table><tr><th>구 분</th><th>보수형</th><th>기본형</th><th>매매형</th></tr><tr><td>추가담보납부기간 (D*일 16 시경 /22 시경** 기산)</td><td>요구일 포함 3 일 (D+2 일 까지)</td><td>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td><td>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td></tr></table> * D :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해외주식 담보용자 약정 신청 계좌의 경우 22 시경 추가 기산 나.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A,B,C 군은 전일종가의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단, 해외주식 담보용자의 경우 임의상환수량 산정 기준 및 임의처분 가격은 다음과 같다. <table><tr><th>구분</th><th>상환수량 기준가격</th><th>주문가격</th></tr><tr><td>일본</td><td>전일종가 * 85%</td><td>현재가 대비 -1%</td></tr><tr><td>홍콩</td><td>전일종가 * 85%</td><td>현재가 대비 -15호가</td></tr><tr><td>중국</td><td>전일종가 * 90%</td><td>현재가 대비 -2.9%</td></tr><tr><td>미국</td><td>전일종가 * 85%</td><td>현재가 대비 -3%</td></tr></table> (단, 미국시장 반대매매 시간의 경우 썸타임시 1 시간 앞당겨집니다.)	구 분	보수형	기본형	매매형	추가담보납부기간 (D*일 16 시경 /22 시경** 기산)	요구일 포함 3 일 (D+2 일 까지)	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	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	구분	상환수량 기준가격	주문가격	일본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1%	홍콩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15호가	중국	전일종가 * 90%	현재가 대비 -2.9%	미국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14. 제 10 조제 2 항, 제 12 조의 “〈별지〉에서 정하는” 추가담보제공기간 및 임의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신용공여유형별 추가담보제공기간: 요구일 포함 2 일(D+1 일 까지) * D: 요구일(추가담보제공 요구일), 16:00 경 기산 해외주식 담보용자 약정 신청 계좌의 경우 22:00 경 추가 기산 (삭 제)	별지 제목 수정 보수형 폐지로 인한 표 삭제
구 분	보수형	기본형	매매형																							
추가담보납부기간 (D*일 16 시경 /22 시경** 기산)	요구일 포함 3 일 (D+2 일 까지)	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	요구일 포함 2 일 (D+1 일 까지)																							
구분	상환수량 기준가격	주문가격																								
일본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1%																								
홍콩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15호가																								
중국	전일종가 * 90%	현재가 대비 -2.9%																								
미국	전일종가 * 85%	현재가 대비 -3%																								

(신 설)

나. 미상환 융자금 발생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 반대매매수량 = 미상환 융자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수량산정기준가격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 로 정의함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투자사례〉

투자원금 400만원, 담보융자금 600만원, 10,000원인 주식 1,000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원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1)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12,000 원	12,000,000 원	200%	
D+1 일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 (12,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10,2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 (12,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9,6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9,600=625)을 상환하기 위해 625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미상환
융자금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
상세
정의

(신 설)

(2)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주식가격	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비고
만기일	5,000 원	5,000,000 원	83%	
D+1 일	-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 (5,000 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4,25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 (5,0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4,000 원)을 기준으로 산정 융자금인 600 만원(6,000,000/4,000=1,500)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200 만원을 추가 납부			

다. 담보유지비율 미달계좌에 대한 반대매매수량 산출(종목별 산출)

고객이 납입기한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더라도 반대매매일까지 계속 적용비율에 미달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실행한다. 단, 현금이 있는 계좌의 경우 금액기준 현금상환(외화예수금 포함)을 먼저 처리하고(CMA 평가금액이 있는 계좌는 CMA RP 환매도 선행), 부족한 경우에만 반대매매수량을 산출한다. (가결제증권의 반대매매도 가능)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 정리를 하는 경우, 종목군별로 차등하게 임의상환수량을 산정합니다. (해당 종목군은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1) 현금상환대상금액 산출

- 현금상환대상원금 = 최종부족금액/[(담보유지비율(예:1.4) - 1) - (담보유지비율(예: 1.4) × (경과일수/365) × 이자율)]
- 현금상환원금의 경과이자 = 현금상환대상원금 × (경과일수/365) × 이자율

담보부족
계좌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
상세
정의

(신 설)

- * 담보미달종목의 현금상환수량 산출방법 : 종목별 산출
- * 윤년의 경우 해당일 수 반영

2) 금액기준 매도상환방식에 의한 반대매매수량 산출

○ 반대매매수량 = 최종부족금액/[수량산정기준가격 × 최소담보비율(예 :1.4)) - 전일종가]

*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 × 종목군별할인율 × 0.992) - 1 주당 융자이자)로 정의함

* 종목군별할인율은 국내주식의 경우 종목군별 A/B/C 군은 전일종가의 - 15%, D/E/F 군은 전일종가의 -20%로 할인하여 산정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중국주식은 전일종가의 -10%, 일본/홍콩/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기타국가 주식은 전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

〈투자사례〉

▶ 투자원금 400 만원, 담보융자금 600 만원, 10,000 원인 주식 1,000 주 매입, 담보유지비율 140%

* 거래 제비용(수수료, 세금, 대출이자)은 고려하지 않음(동 비용을 포함할 경우 손실 규모 증가)

날짜	주식가격	계좌평가금액	담보비율	비고
D 일 장중	10,000 원	10,000,00 원	167%	
D 일 장마감	8,500 원	8,500,000 원	142%	
D+1 일	8,300 원	8,300,000 원	138%	추가담보 납부요구
D+2 일	8,100 원	8,100,000 원	135%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D+3 일	임의처분 실행			

(1) 국내주식 A/B/C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담보부족
계좌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
산출
상세
정의

	(신 설)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95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195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137 만원(195 주×7,000 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 만원)의 4.6 배 수준 (2) 국내주식 D/E/F 군의 경우 임의처분 수량을 전일종가(8,100 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309 주 반대매매 필요 ☞ 반대매매 수량(309 주)이 7,000 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 담보유지비율(140%) 를 충족하기 위한 임의처분 금액은 약 217 만원(309 주×7,000 원)으로 담보부족금액(30 만원)의 7.2 배 수준	담보부족 계좌 임의상환 처분증권 수량산출 상세정의
〈별지〉	15. 제 12 조제 5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이하 미상환용자금발생 이라 칭한다.) 1) 미상환 용자금 발생 당해 종목 2) 현금매수종목(가결제 증권이 최우선, 대용가격 없는 현금매수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3) 예탁증권담보용자종목(전일종가 기준으로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 나.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이하 담보부족발생 이라 명한다) 1)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 → 일본 → 홍콩 → 중국 → 미국 2) 예탁증권담보용자에 관한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용자일자가 최근인 종목 3) 예탁증권담보용자에 관한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용자일자가 동일한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낮은 종목 (또는 알파벳 자릿수가 긴 종목 > 자릿수가 동일하면 알파벳 역순)	15. 제 12 조제 5 항의 “〈별지〉에서 정하는” 임의상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1) 1 차 현금상환 05:30 경), 2 차 현금상환 (08:00 경) 2) 현금상환은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늦은 국가 순으로 하며, 국내를 마지막 순으로 상환한다.(단, 자동현금상환 시점에 주식거래시장이 마감된 국가에 한함) 3) 현금상환을 위한 원화 부족 시 외화예수금 환전은 실시간환전 가능 통화로 하며, 환전순서는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 (결제환율은 당사가 사전에 고시하는 환율 적용) 나.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 (이하 미상환용자금발생 이라 칭한다.) 1) 미상환 용자금 발생 당해 국가 우선 반대매매 실행 후 국내를 포함하여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순차적으로 개장되는 국가 순서로 반대매매 처리한다. 2) 미상환 용자금 발생 당해 종목 3) 현금매수종목 가)최근일자 매수 종목	국가별 자동현금 상환순서 추가 만기 미상환 임의상환 기준 상세정의

4) 예탁증권담보용자종목 중 용자일자가 최근인 종목 5) 예탁증권담보용자종목 중 용자일자가 동일한 종목이 복수인 경우 종목번호 낮은 종목 (또는 알파벳 자릿수가 긴 종목 > 자릿수가 동일하면 알파벳 역순) 다. 임의상환 외화예수금 환전 순서 USD → JPY → HKD → CNY 순으로 환전 한다. 라. 국가별 자동현금상환 순서 미국 → 중국 → 홍콩 → 일본 → 국내주식 순으로 상환 한다.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단, 국내 주식의 경우 대응가격 없는 현금매수종목은 반대매매 대상에서 제외 4) 신용공여종목 가) 대출일자 빠른순서 나) 종목번호 빠른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단, 전일종가 대비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별지 14 의 나. 상환수량 기준가격) 상환차손이 예상되는 종목은 반대매매대상에서 제외 다.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납입 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반대매매 순서 (이하 담보부족발생 이라 명한다) 1)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는 국내를 최우선으로 하며, 온라인거래 및 실시간 환전이 가능한 국가 중 주식거래 개장시간이 빠른 국가 순으로 한다. 2)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용자일자가 빠른 종목 3)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4) 담보부족 발생 당해 종목 중 신용용자 → 담보용자 순 5) 신용공여 종목 중 용자일자가 빠른 종목 6) 신용공여 종목 중 종목번호 빠른 종목 (또는 알파벳 순서) 7) 신용용자 → 담보용자 순 라.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https://www.miraeassetdaewoo.com) > 이용안내/문의 > 온라인서비스가이드 > 대출 > 예탁증권담보용자 / 매도증권담보용자에 게시	담보부족 에 따른 임의상환 기준 상세정의
---	--	---

〈별지〉	18. 기타 가. 특정일에 융자일이 동일한 일반담보융자(A-Loan 포함), S-Loan 이 합병 등 권리발생으로 동일종목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융자는 일반담보융자로 잔고가(만기일, 금리 등 포함) 통합된다. 나. 동일 종목으로 일반담보융자(A-Loan 포함)를 실행한 후 매도상환을 하는 경우, 동일 종목은 담보융자 수량이 통합되어 표시되므로 별도 설정을 통해 매도순서(선입선출, 후입선출 등)를 충분히 확인하고 주문을 실행해야 한다. 별도 설정 없이 주문을 실행하는 경우 선입선출원칙에 따른다. 또한 동일 종목으로 동일 융자일에 일반담보융자와 A-Loan 융자금이 모두 있는 경우, A-Loan 융자금과 잔고를 우선하여 상환된다. 다. 현금상환은 영업일 01:30~23:30까지 가능하며, 현금상환취소는 상환당일에 한해 취소 후 해당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충족 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 설)	18. 기타 (삭 제) 해외주식 담보평가 시 적용환율은 국내주식 장중(15:30분 이전) 전일 기준환율 적용하며, 장마감 후(15:30 이후)당일 기준환율 적용한다.	〈별지18〉 삭제 가, 나 항목은 융자 유형별 담보관리 되므로 내용 삭제다 항목은 예탁증권담보융자설명서로 내용 대체 해외주식 담보평가 시 적용환율 기준 추가
-------------	---	---	---